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시 인구요건 완화〉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4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시 인구요건 완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9.
3. 회부연월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시 인구요건 완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시 인구요건을 현행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략)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이하 “대도시등”이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u>대도시</u>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u>대도시등</u> 의-----.

현행	개정안
도지사 또는 <u>대도시</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u>대도시</u>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u>대도시</u>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u>대도시</u>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u>대도시</u>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	-----<u>대도시등의</u>----- -----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 --<u>또는 대도시등의</u>----- ----- ----- -<u>및 대도시등</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 ① ----- ----- ----- ----- <u>대도시등의</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 -----<u>대도시등의</u>----- ----- -----

현 행	개 정 안
방연구원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는 전체 74개 중 16개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치할 수 없음.

이는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면, 독자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각 시별 인구 현황]

		지역명	인구수(명)	면적(k㎡)
인구 50만 이상인 시(16개)		수원시	1,224,979	
		용인시	1,077,481	
		고양시	1,044,968	
		화성시	1,004,079	
		창원시	1,001,043	
		성남시	900,867	
		청주시	873,368	
		부천시	794,082	
		남양주시	718,385	
		안산시	701,551	
		천안시	694,765	
		전주시	649,634	
		평택시	615,755	
		시흥시	571,982	
		김해시	549,861	
		안양시	545,800	
과주시	510,689			
인구 50만 미만인 시(58개)	인구 30만 이상인 시(10개)	김포시	499,536	276.7
		포항시	493,075	1130.7
		의정부시	456,516	81.5
		구미시	407,365	615.6
		광주시	402,335	430.9
		아산시	392,509	542.8
		원주시	365,720	868.2
		양산시	359,628	485.6
		진주시	346,145	712.9
		하남시	320,872	92.9
인구 30만 미만인 시 (48개)				

주: 1. 인구수는 2024년말 기준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등은 제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인구총조사」 및 KOSIS 국가통계포털

개정안이 반영되면, 인구가 50만 미만이나 30만 이상인 시 중 면적
요건(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5개시(포항시, 구미시, 아산시,

원주시, 진주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 또는 인구 30만 이상과 면적 1,000km² 이상’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도 동일하게 대도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따를 경우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대도시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포항시 1개 시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대도시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또는 인구 30만 이상과 면적 500km² 이상’으로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